

「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2026. 9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푸드테크정책과)

1. 의결주문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식품산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1508호, 2026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지원 대상,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·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·

기준·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(제11조의2를 제11조의 3으로 하고 제11조의2 신설)

- 1) 지원대상은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로 규정
- 2) 지원기준은 식품 제조·생산 시설의 자동화·기계화 및 로봇 도입, 인공 지능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도입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규정
- 3) 지원대상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계획서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처 협의 중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중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·제조시설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산업 관련 시설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산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.

1. 로봇, 센서 등 자동화 설비 도입
2. 선별기,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도입
3.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도입
4.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·기계화 및 지능화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화등”이라 한다) 설비 또는 시스템의 도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

2.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

3.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

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, 내용,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1조의2</u>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3</u> (현행 제11조의2와 같 음) <u>제11조의2(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의2제항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·제조시설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식품산업 관련 시설”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식품산업자에 대하여 그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.</u> <u>1. 로봇, 센서 등 자동화 설비 도입</u> <u>2. 선별기, 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도입</u> <u>3.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 도입</u> <u>4. 그 밖에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화·기계화 및 지능화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화등”이라</u>

한다) 설비 또는 시스템의 도입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

2.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

3. 자동화 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시 식품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

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관련 시설의 자동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화등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사업의 목적, 내용, 필요성 및 자동화등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관련 시설의 자동화등 지원 절차 및 방법

<u>제11조의2</u> (생략)	<u>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정한다.</u> <u>제11조의3</u> (현행 제11조의2와 같 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116